

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seoul.go.kr

제3631호

2020.12.4.(금)



목 차

◆ 고 시

제2020-529호	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유원시설업체 방역 추가 강화조치 고시	2
제2020-530호	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 시행에 따른 이·미용업 방역조치 고시 ...	4
제2020-531호	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에 따른 PC방, 영화관, 오락실, 멀티방, 직업훈련기관, 대형유통시설 등 방역조치 고시	6

고 시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529호

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유원시설업체 방역 추가 강화조치 고시

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(2020.11.24.)과 관련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 49조 제1항 제2호, 제1항 제2의 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유원시설업체(종합·일반·기타)에 대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추가 강화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12월 4일
서울특별시장

1. 기 간: ' 20년 12월 5일(토) 0시 ~ ' 20년 12월 18일(금) 24시
2. 대 상: 서울시 소재 유원시설업(종합·일반·기타)
3. 내 용: 대상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

사업주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■ 출입자 명부 관리 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 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 **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■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■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 ■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■ 수용가능인원의 1/3로 인원 제한 ■ 워터파크 집합금지 ■ 음식섭취 금지 (별도 구획이 나뉜 식당이 있는 경우, 해당 장소 내에서만 취식가능) ■ 2시간마다 15분이상 환기 ■ 관리자·이용자 발열체크 의무화 ■ 사람이 군집하는 이벤트·행사 금지 ■ 21시이후 집합금지	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■ 마스크 착용

2. 위반 시 조치사항

○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

가. 부과근거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제1항 제2의 2호~4호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(과태료) 제2항, 제4항, 제5항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3조(과태료의 부과) 별표 3

나. 부과사유 : 유원시설업체에서의 감염병(코로나19 등)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·이행 의무부과

다. 부과권자 : 시장·구청장

라. 부과대상 : 서울시 유원시설업체 방역수칙 미준수자(관리자·운영자·이용자)

마. 부과금액

-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가 방역수칙 위반 시 150만원(1차), 300만원(2차) 부과
-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 시 당사자에게 10만원 부과

바. 효력발생일 : 2020년 12월 5일 00시부터

사. 불복절차

-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음.

○ 고발조치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제1항 제2호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(300만원 이하의 벌금)

○ 업체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검사·치료비 등 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530호

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 시행에 따른 이·미용업 방역조치 고시

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 시행(2020.12.05.)과 관련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, 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이·미용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12월 4일
서울특별시

1. 기 간: '20년 12월 05일(토) 0시 ~ 별도 해제시까지
 2. 대 상: 서울시 소재 이·미용업
 3. 내 용: 위 기간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이·미용업 집합제한 조치
(방역수칙 준수 의무화)
 4. 위반 시 조치사항
 -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 (기본 2주)
 - 위반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고발조치 병행 가능 (벌금 300만 원 이하)
 -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
- ☐ 이·미용업 방역수칙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① 출입자 명부 관리 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 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 **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②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③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 ④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⑤시설 허가·신고면적 8㎡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 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	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② 마스크 착용

관리자 · 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⑥ 손님 예약제 운영 ⑦ 손님 음료 제공 금지 ⑧ 21시 이후 운영중단	

※ ‘이용자’ 라 함은 관리자 · 운영자 · 종사자 · 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 ※ 상기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이며,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시 수칙내용은 달라질 수 있음.

5. 법적근거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
 - － (제1항) 질병관리청장, 시 · 도지사 또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 - － (제1항제2호)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
 - － (제1항제2의2호)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 · 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제7호
 - －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

6. 처분의 효력 발생일: 2020년 12월 05일 00시부터

7.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,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8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제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9. 담당부서: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531호

**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에 따른
PC방, 영화관, 오락실, 멀티방, 직업훈련기관, 대형유통시설 등 방역조치 고시**
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제1항 제2의 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일반관리시설 중 PC방, 영화관, 오락실, 멀티방, 직업훈련기관, 대형유통시설 등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12월 4일
서울특별시

1. 기 간 : ' 20년 12월 5일 (토) 00시 ~ ' 20년 12월 18일(금) 24시

2. 대 상

- 서울시 소재 일반관리시설 중 PC방, 영화관, 오락실·멀티방 등
- 서울시 소재 직업훈련기관
- 서울시 소재 대형유통시설*
 - *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종합소매업 중에서 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 규정(제2조 제3호)된 '매장 면적의 합계가 3천㎡이상인 대규모점포'에 한정

3. 내 용 : 대상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

○ PC방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▶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▶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 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▶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*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▶ 시설 내 음식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(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, 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〈 서울시 비상조치 〉 ▶ 21시 이후 ~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▶ 흡연구역 1인 사용 원칙 * 흡연구역 출입구 및 내부 공간에 동시 이용자	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▶ 마스크 착용 ▶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(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, 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〈 서울시 비상조치 〉 ▶ 흡연구역 동시 이용자 2명 이상 사용 금지

관리자 · 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수 제한 표시 ▶ 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-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(의무) 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 *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, 장애인, 단기 체류외국인, QR코드 거부,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▶ 좌석 구분 칸막이는 비말차단이 가능한 높이일 것 (예. 앉은 시선 높이) ▶ 손님이 이용한 좌석은 테이블, 헤드셋, 마우스, 키보드 등 소독 후 재사용	

- ※ ‘이용자’ 라 함은 관리자 · 운영자 · 종사자 · 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 *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서울특별시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

○ 영화관

관리자 · 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▶ 출입자 명부 관리 - 전자출입명부 설치 · 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 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 · 이용(권고) **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 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▶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▶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 · 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 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▶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* 사전예약제 등 통제 인원관리 ▶ 시설 내 음식 (물 · 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〈서울시 비상조치〉 ▶ 21시 이후 ~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▶ 상영관 내 거리두기 좌석 밴딩처리 등 물리적 조치 의무화 ▶ 매표소, 매점, 대기공간 등 이동 시 거리두기 * 고객 이동동선을 바닥에 스티커 등으로 표시 ▶ 출구와 입구 동선 구분	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▶ 마스크 착용 ▶ 시설 내 음식(물 · 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 금지

- ※ ‘이용자’ 라 함은 관리자 · 운영자 · 종사자 · 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 *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서울특별시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

○ 오락실·멀티방 등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▶ 출입자 명부 관리 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 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 **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공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▶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▶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 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▶ 이용인원 제한 (시설 허가·신고면적 8㎡당 1명) 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▶ 시설 내 음식(물·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〈서울시 비상조치〉 ▶ 21시 이후 ~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▶ 흡연구역 1인 사용 원칙 * 흡연구역 출입구 및 내부 공간에 동시 이용자수 제한 표시 ▶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 실시 후 재이용	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▶ 마스크 착용 ▶ 시설 내 음식(물·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 금지 〈서울시 비상조치〉 ▶ 흡연구역 동시 이용자 2명 이상 사용 금지

※ ‘이용자’ 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 *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서울특별시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

○ 직업훈련기관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▶ 출입자 명부 관리 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 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 **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공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▶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▶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 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▶ 시설 내 음식(물·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하지	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▶ 마스크 착용 ▶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 제외) * 월 80시간 이상인 과정을 운영하는 시설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, 식당방역수칙(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)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

관리자 · 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앞도록 안내 * 월 80시간 이상인 과정을 운영하는 시설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, 식당방역수칙(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)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〈서울시 비상조치〉 ▶ 21시 이후 ~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▶ 강의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이용 인원 제한 또는 좌석 한 칸(이용자간 1m이상) 띄워 앉도록 함 ▶ 강의실 입구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▶ 수료기준에 맞는 훈련생 조기 종강 권고	

- ※ ‘이용자’ 라 함은 관리자 · 운영자 · 종사자 · 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 *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서울특별시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

○ 대형유통시설

관리자 · 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▶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▶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 · 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 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▶ 이벤트행사 운영금지 ▶ 시식 · 시음 코너 운영 금지 〈서울시 비상조치〉 ▶ 21시 이후 ~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(※ 야간 도매업 제외) ▶ 문화센터·어린이 놀이시설 운영 중단	▶ 마스크 착용

- ※ ‘이용자’ 라 함은 관리자 · 운영자 · 종사자 · 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 *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서울특별시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

4. 위반시 조치사항

-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 · 이용자에 과태료 부과
 -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(1차 150만원, 2차 이상 300만원),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 (10만원)
-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집합금지(기본2주) 조치 병행가능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
-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,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 명령 가능 (12.30.시행)
-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인한 감염 확산 시 해당 위반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

5. 법적근거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의제7호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

6.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0년 12월 5일 0시 부터

7.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,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8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.

9. 담당부서 : 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(PC방·오락실 02-2133-5242,
영화관·멀티방 02-2133-5236, 대형유통시설 02-2133-5258)
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(직업훈련기관 02-2133-5463)

- 안전한 서울 • 따뜻한 서울
- 꿈꾸는 서울 • 숨쉬는 서울



기관의 장	
선	
람	

공 람									